

## 칸디思想의 研究 (四)

저자 미상

五는 不盜의 誓이니, 我等은 一面으로는 盜賊이라. 萬一 내가 直接으로 不必要한 物件을 얻어서 이를 保存할 것 갓흐면 나는 他人에게서 이를 盜하였 다 할 수 있는 싸담이로다. 大抵 自然은 晝夜로 不休不息하고 我等의 需要를 滿足케 하기 爲하여 生産을 營爲함으로 萬一 各人이 오즉 自己의 需要만 이 를 採取하면 이 世界에는 貧者가 屢서저서, 餓死者는 根絶할 것이니 實로 이 는 例外를 不許하는 大自然의 根本法則이라. 그런데 我等은 오래 동안 盜賊 질을 繼續하여 왔슴으로 茲에 不平等이 生겼다고 하엿도다. 「칸디」는 社會主 義者가 아님으로 既得한 所有物을 放棄하라고는 아니하나, 暗黑한 이 世界로 부터 光明의 曙光을 보라고 하는 者는 이 根本法則을 遵奉하라 하고, 「칸디」 는 누구에게든지 아모 것도 업새게 하라고는 아니 하얏나니, 萬一 所有한 것 을 다 拋棄하라 하면 現代人에게는 苦痛과 怨恨을 주게 됨으로 이리케 한 것은 不殺生의 誓를 違反함인 緣故라. 그러함으로 「칸디」는 他人이 自己 以上의 所有物을 가진 것을 容許하나 그러나 自己가 生存하는 동안은 自己에 게 不必要한 것은 決코 所持치 안는다고 하여, 印度 三億의 人民이 잘 입고 잘 먹을 새까지 自己의 所有한 何物에 對하야라도 이를 自由로 할 權利는 업다고 하고, 「칸디」와 갓치 印度 國情을 잘 아는 同胞는 서로 自己의 需要 를 節儉하야 엇더한 境遇에는 飢渴이라도 참고 彼等 同族을 暖衣飽食케 하 라 하얏도다.

六은 國產의 誓이니, 物貨 及 物貨 製作者에게 詐僞의 可能性이 잇다고 하면 그 貨物을 使用하는 것은 眞理와 不一致함으로, 例컨대 英國, 獨逸, 印 度 等の 工場製品은 詐僞가 만하야 彼等の 物貨를 쓰는 것은 眞理에 不합함 으로 眞理의 信仰者는 이를 쓰지 아니할 것, 卽 現代의 商品은 舉皆 資本家 의 營利心의 結晶임으로 卽 商品을 製作하라면 몬저 利益의 多少를 打算하 며, 資本家는 利得의 可能性을 보고야 事業을 經營함으로 이리한 商品은 萬

人의 需要를 供給한다는 公益의 假面을 씌었스나, 그 實은 他의 犧牲으로써 我를 利하려 하는 詐僞物에 不過한 것임으로 이를 쓰지 아니할 것, 特히 勞働者는 諸工場 內에서 心을 痛케 하고 生을 苦케 하여 勞働者의 身體를 傷케 하고 精神을 耗損케 함으로, 外國品과 複雜한 機械의 製品은 眞理와 不殺生의 信者에게는 쓰는 것을 禁하며, 또한 如斯한 製品의 使用은 不盜不持의 誓를 破壞한다 하여 이를 禁하고 또한 我等의 需要를 滿足케 하기 爲하여 隣人을 捨하고 他에 走하는 것이나, 自國을 捨하고 外國을 取하는 것은 自然의 法則을 背違한 것이니, 卽 神은 一民族에 對하여 一地方으로써 하얏슴으로 그 民族은 그 地方 內에서 生産製作한 것을 쓰는 것이 神의 意에 合한 것임으로 自國産을 쓰지 아니하는 것은 自然의 法則 卽 神意에 不合致한 것이다.

萬一 吾人의 必需品으로서 隣人이 生産치 못한다든지 自國에서 生産치 못하는 것인 以上에는 可能性있는 때까지는 이를 生産, 製作, 熟練케 할 方法을 講究하여 아모조록 國産이 되도록 하되, 絶對적으로 印度에서 生産 製作할 수 업는 物件이면 이를 使用치 말지니, 吾人은 必要하다고 想覺한 物件이 生活만 簡單히 하면 업서도 生活하는 수가 있는 까닭이라 하여 外國 織物 破棄의 宣言과 國産의 宣言을 하얏나니, 먼저 外國 織物의 破棄宣言을 보면 「我等이 必要한 程度를 定하여 可及적으로 織物을 節用하는 것 뿐으로는 完全치 못함으로 更히 徹底的으로 各自가 所持한 外國 織物 一切을 破棄함이 可하니, 我等이 萬一 外國 織物의 使用에 依하여 印度에 大害를 □하고 卽 外國 織物 使用으로 印度에서는 每年 資本의 四分之一이 外國으로 流出하여 印度 經濟上 不利가 來하고 機織手(손소 짜는 者)의 種族을 全히 壞滅한다고 認證하고, 이러한 罪에 더럽힌 織物 卽 그 織物로 因하여 印度民族의 物質的 災禍를 招來하여, 貧窮으로부터 延하여 罪惡에 陷케 하는 이러한 織物을 破棄함은 當然한 일이라. 이러한 關係에서 國産(스와데시)과 同盟排斥(쑤이코트)의 區別을 理解할 必要가 잇도다. 卽 國産은 宗教的 概念이니 그 는 各人 天賦의 責任이오. 人民의 福利는 오즉 그에 잇슴으로 國産의 誓는 懲罰을 爲해서나 復讎를 爲해서나 換言하면 國産의 誓는 決코 外部의 事情을 爲하여 取할 者가 아니지마는, 同盟排斥은 純粹한 世俗的, 政治的 武器니 다시 말하면 惡意에 根하고 懲罰에 基함으로 無抵抗者 되려 하는 者는 決코 同盟排斥에 加擔할 것은 아니오, 永久的 無抵抗은 오즉 國産 뿐으로야만 實行할 수가 있다.」고 하엿도다. 그러나 「싼디」는 所謂 「로오랏트[롤라트]」 法案이 發表되자마자 이 法案을 撤廢하기까지 外貨를 同盟排斥하고 이 法案撤廢와 同時에 同盟排斥이 終熄된다고 提示하얏는데, 이는 다못 惡意 업시 爲

政者의 態度를 攻擊하려 하는 것이오, 英國人이나 其他 外國人을 懲罰할 願望이 아니니, 그러함으로 「싼디」는 말하되 「내가 萬一 外國品을 使用치 아니치 못할 境遇에는 나는 英國과 政治的 關係를 가졌슴으로 英國品을 使用하는것이 正當하다고 想覺한다.」고 하얏도다. 다음에 國產의 宣誓를 보면 以上の 制限的 國產(衣服)의 誓를 遂行키 爲하여 下記와 如한 事項을 助言하여, 「神을 나의 證人 삼고 自今으로 나의 □用하는 衣服類는 印度의 棉絹 及 毛로 印度에서 製作된 物品에 限한다.」는 것을 嚴肅히 宣言하고, 「全 外國品の 使用을 禁止키 爲하여 余의 所持한 온갖 外國의 衣類를 破棄한다.」하얏으며, 이 宣言을 本則 삼고 다못 물네로 드린 실(絲)로 製作한 手織物을 使用함을 必要로 하나니 設令 印度棉으로 製作하얏다 하더라도, 輸入品인 以上에는 國產的 織物이 아니오 印度棉이 自國製의 紡績車로 印度에서 搾 것이 되고, 搾 실이 自國製의 手織械로 그린 것이라야 完全한 國產의 地境에 達하나, 그러나 萬一 印度人이 外國製 機械로 印度의 綿絲로 搾 □物이라도 이는 國產의 誓에 反한다 하얏도다.